

## 퇴직급여 현황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sup>†</sup>

정세창<sup>1</sup>

<sup>1</sup>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전공

접수 2012년 10월 25일, 수정 2012년 11월 13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19일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퇴직급여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교차분석의 실증분석과 외국사례를 사용한다. 교차분석 결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은퇴준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의 확대, 저소득층의 경우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교차분석, 리스커연금, 연금화, 퇴직급여, 회귀분석.

### 1. 서론

한국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출산율은 매우 낮아 1주 (first pillar)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공적연금 대비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인 45.7%이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급여율의 단계적 인하로 향후 소득대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아진다. Lee (2011)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10년 25.8%에서 2040년 65.6%, 2060년 8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3주 (third pillar)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인구대비 개인연금 가입률은 15.8%로 매우 낮으며, 동 가입률이 현재의 세제혜택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해볼 때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2주 (second pillar)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도입 역사가 짧고, 제도 설계의 미비함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현재로서는 제도설계 당시만큼 확대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보장구조에서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부문은 사적연금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hin (2011)은 향후 10년간 사적연금 시장의 성장을 GDP 대비 20%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 부문은 획기적인 세제혜택이나 급격한 소득의 증가 없이는 확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 부문에서 사적연금과 관련된

<sup>†</sup>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sup>1</sup> (339-701) 세종시 조치원을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전공, 부교수.  
E-mail: scjung@wow.hongik.ac.kr

연구는 주로 채널 및 상품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Kang과 Jung, 2009; Ko 등, 2009; Jung 등, 201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을 건설하게 하는 한 방안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 1절 서론에 이어 제 2절에서는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 3절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현황을 예상금액, 퇴직급여가 취약한 직종 등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퇴직급여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4절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을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제 5절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표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내국인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1차추출단위 (primary sampling unit)는 동읍면이며, 2차추출단위 (secondary sampling unit)는 동읍면 내에서 연구대상 연령층의 성인이 거주하는 가구이다. 전체적으로 2,023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으로는 층화 (stratification) 추출을 사용하였는데, 층화변수로는 시도를 사용하되,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층화하였다. 표본 배분은 지역별 대상인원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실증분석의 경우 빈도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퇴직연금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 3. 퇴직급여 현황

### 3.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예상 금액

향후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예상금액은 평균 7,39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퇴직금의 예상금액은 Table 3.1과 같이 학력, 소득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예상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특성 중 연령은 퇴직금 예상금액과 정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 50대 이상에서 40대보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라고 보아진다.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연히 예상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 수준이 47.7%가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Table 3.1** The factors influencing a retirement allowance (regression)

| Classification                                   | Estimate ( $\beta$ ) | t-Value |
|--|----------------------|---------|
| Intercept  | -123964.81           | -0.55   |
| The year of householder's birth                  | 59.02                | 0.51    |
| Junior high school graduates                     | 4303.17***           | 3.03    |
| Senior high school graduates                     | 7115.35***           | 3.96    |
| University graduates                             | 8478.27***           | 8.60    |
| Total income                                     | 1.00***              | 4.23    |
| The middle settlement for a retirement allowance | 1534.16              | 0.97    |

Note: \*\*\* means  $p < 0.01$ .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 예상금액은 5,06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퇴직금보다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기간이 퇴직연금보다 짧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Table 3.2와 같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예상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경우는 400만원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한 후 600만원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Table 3.2** The factors influencing a retirement pension (regression)

| Classification                                   | Estimate ( $\beta$ ) | t-Value |
|--|----------------------|---------|
| Intercept  | 571990.73***         | 4.28    |
| The year of householder's birth                  | -292.04***           | -4.30   |
| Junior high school graduates                     | 1626.77              | -1.31   |
| Senior high school graduates                     | 1831.41***           | 3.07    |
| University graduates                             | 3635.99***           | 9.42    |
| Total income                                     | 0.13                 | 1.54    |
| The middle settlement for a retirement allowance | 1811.01              | 1.54    |

Note: \*\*\* means  $p < 0.01$ .

**3.2. 자영업자 등의 퇴직급여 부재 현황**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은 48.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급여 중 퇴직금제도에 해당하는 비율은 22.5%, 퇴직연금은 12.0%,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비율은 17.1%로 나타났다.

**Table 3.3**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job

| Classification                     | None               | A retirement allowance & a retirement pension |
|------------------------------------|--------------------|---|
| Large enterprises                  | -1214.0            | 1214.0  |
|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 -1227.5            | 1227.5  |
| Self-employed person               | 1989.8             | -1989.8                                       |
| Pearson $\chi^2$                   | 4.18 × 106 (value) | .000 (significance)                           |

퇴직급여 사각지대 현황을 직장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 벤처기업, 전문기업은 2층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은 79.6%, 벤처기업은 47.9%, 전문기업은 41.6%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91.4%, 70.0%의 비율로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의 노후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2주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판매직, 단순노무직에서 각각 91.8%, 84.6%, 60.5%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직의 경우 20.2%만이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 상대적으로 2층보장이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의 세 그룹을 대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4**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occupation

| Classification    | None               | A retirement allowance & a retirement pension |
|-------------------|--------------------|---|
| Clerical employee | -1378.0            | 1378.0  |
| Salesman          | 1097.2             | -1097.2                                       |
| Laborer           | 442.8              | -442.8  |
| Pearson $\chi^2$  | 2.16 × 106 (value) | .000 (significance)                           |

다음으로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70.8%가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의 경우는 41.0%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차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5**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full-time or part-time

| Classification   | None             | A retirement allowance & a retirement pension |
|------------------|------------------|---|
| Full-time job    | -1199.1          | 1378.0  |
| Part-time job    | 1097.2           | -1097.2                                       |
| Pearson $\chi^2$ | 1.44×106 (value) | .000 (significance)                           |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서 70%내외로 퇴직급여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200만원 이상에서는 40% 내외로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퇴직급여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6**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income

| Classification                       | None             | A retirement allowance & a retirement pension |
|--------------------------------------|------------------|---|
| Less than 2 million won              | 1004.0           | -1004.0                                       |
| 2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 -527.6           | 527.6   |
| 4million won~less than 6 million won | -292.3           | 292.3   |
| more than 6million won               | -238.3           | 238.3   |
| Pearson $\chi^2$                     | 1.01×106 (value) | .000 (significance)                           |

#### 4.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보면 대부분 일시납으로 받고 있다. 2011년 11월 중 연금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탈퇴자) 4,604명 가운데 일시금 수급자가 4,434명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는 1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시납이 많은 이유는 크게 세제와 목돈이 선호되는 경제 사회 환경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세제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일시금의 경우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또한 퇴직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일단 40%를 정률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한번 더 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분연승법이란 장기간의 소득 누계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특례로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의 경우 (300,000×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의 경우 (1,500,000+500,000×(근속연수-5년)), 10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4,000,000+800,000×(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인 경우는 (12,000,000+1,200,000×(근속연수-20년))로 계산된다.

Table 4.1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 The length of service                 | Deduction for the length of service               |
|---------------------------------------|---|
| Less than 5 years                     | (300,000×The length of service)                   |
| More than 5 years~less than 10 years  | (1,500,000+500,000×(The length of service-5))     |
| More than 10 years~less than 20 years | (4,000,000+800,000×(The length of service-10))    |
| More than 20 years                    | (12,000,000+1,200,000×(The length of service-20)) |

이에 비해 퇴직급여를 연금 (annuity)으로 받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작아지며, 연금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90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 퇴직급여 수령과 관련된 세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급기간이 짧아질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이 유리한 체계로 되어 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퇴직급여 수령 방법으로 선호되는 세제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일시금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시금에 대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시금 수령이 노후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칠레의 경우 연금전환 수준을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전환 대상 적립금 기준으로 볼 때 100%이다. 영국의 경우 적립금의 25%까지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고, 칠레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 전환이 안 되므로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100%보다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금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Rocha와 Thorburn (2010)는 칠레의 경우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볼 때 70% 정도의 연금전환율을 나타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금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일시금보다 연금이 노후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과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유리한 세제 정책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연금전환 수준은 1998년 70%에서 2004년 9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Bütler와 Ruesch, 2007). 미국의 경우 2000~2003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볼 때 DB에서 평균적으로 64.4%로 추정되고 있다 (Glickman와 Kuehneman, 2006).

일본의 연금관련 정보기관인 연금정보가 대형 퇴직연금사업자 8개 금융회사에 설문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6,333건의 계약 중 유기연금 (확정연금)이 5,720건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신연금이 9.7%로 매우 낮았다. 이에 2001년 도입된 신DB제도에서는 기존의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에서 일시금 지급이 많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야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하고 있다.

일시금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시 세율이 유리하다면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일시금 선호자 141명 중 69명으로 48.9%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 기혼, 많은 자녀 수,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일시금 수급자가 많지만 설문에서 향후 퇴직연금 수급시 선호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74.3%가 연금으로 받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기혼, 사무직, 전문가 및 관리자, 고소득자, 순자산, 총소득, 저축금액이 많은 응답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는 각각 55.1%, 65.2%, 68.9%로 연금 선호 비율이 다른 직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시금 선호의 또 다른 이유는 목돈이 선호되는 경제 사회 환경인데,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430명 중 240명만 퇴직연금을 본인의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중 163명은 본인의 노후생활비와 다른 목적(가족지원, 부채상환, 자산 형성 등)에 함께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연금이나 일시금이냐를 선택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금을 강제화 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가족 지원 등 목돈이 선호되는 여건에서 연금을 강제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정 한도까지는 일시금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유리한 세제 형태를 가지면 목돈에 대한 니즈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인 연금혜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영국은 적립금이 25%까지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2007년 모든 퇴직급여에 대해 면세조치를 단행하기 까지 50만 달러까지는 일시금 수령 시 최저세율을 적용하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 5. 결론 및 시사점

퇴직급여 현황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5%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영업, 비정규직, 저소득층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부여하여 이들의 노후설계를 돕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 2002년 도입한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의 도입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리스터연금은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연금인데,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 지원 규모가 더 크게 되는 특징이 있다. 2008년 현재 가입자가 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정부는 기본 보조금 154유로, 자녀 1인당 보조금 185유로 등 정부의 최대기여 한도인 2,100유로 내에서 보조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2,100유로를 한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형 개인연금제도이다. 2002년 도입 시 가입자는 337만 명이었으나, 2009년 1,240만 명 이상이 가입하여 약 3.7배 성장하였고, 독일 가입 대상자 중 약 1/3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의 개인연금계좌제도(PA; personal accounts)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PA는 연소득이 5천~33,500파운드(약 900만원~6,0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4%, 직장 3%, 국가 1%가 분담하여 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우리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하거나 지체할 경우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난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들의 2층 보장을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개인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도입하여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근퇴법의 개정안 의결로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기가 2017년으로 너무 늦다.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직종 특성 등에 따라 원하는 IRP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IRP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완화되어 있고, 목돈이 선호되는 경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일시금에 대한 선호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을 법으로 강제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가족지원 등 일시금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에 일정 한도까지는 일시금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유리한 세제 형태로 하는 연금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ütler, M. and Ruesch, M. (2007). *Annuities in Switzerlan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438,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Glickman, M. and Kuehneman, G. (2006). *Retiree pension payout decisions-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1992-200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Washington DC.
- Jung, S. C., Oh, S. C. and Kang, J. C.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roduct portfolio and interest rate on the lapse rate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 73-80.
- Kang, J. C. and Jung, S. C. (2009).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reliance, and loyalty to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713-718.
- Ko, B. S., Lee, S. O. and Hur, J. (2009). An empirical study on telemarketing efficiency at life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673-684.
- Lee, Y. H. (2011). Establishing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cusing on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the social sustainability-. *Pension Studies*, **1**, 1-27.
- Rocha, R. and Thorburn, C. (2010). *Developing annuities markets: The experience of Chil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Shin, S. H. (2011). *The future of insurance: Asking to pension*, Mirae Asset Securities, Seoul.

## The reality of benefits for retirement and the measures for annuitiz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sup>†</sup>

Se Chang Ju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Hongik University

Received 25 October 2012, revised 13 November 2012, accepted 19 November 201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the occupational pension and suggest annuitization over a lifetim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come after retirement. A survey and the empiric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re employed. An research on a case study of an advanced countries is also conducted.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post-retirement amenities of the self-employed person and the lower income bracket are seriou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s suggested for the self-employed person and Riester Pension in Germany is recommended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The cases in Australia and the UK are useful for annuitization over a lifetim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Keywords:* Annuitization, crosstabulation analysis, occupational pension, regression, Riester pension.

---

<sup>†</sup>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2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sup>1</sup>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nd Insurance, Hongik University, Sejong 339-701, Korea.  
E-mail: scjung@wow.hongik.ac.kr